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6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4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김영환 · 이수진
남인순 · 박상혁 · 장종태
홍기원 · 박용갑 · 박지원
용혜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「모자보건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. 또한, 「아동복지법」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,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하거나 산후조리원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임.

이에 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

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).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4호 중 “포함한다”를 “포함한다. 이하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호(종전의 제7호) 중 “제6호”를 “제8호”로 한다.

6.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

이 법 시행 당시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<p><u>6.</u> (생략)</p> <p><u>7.</u> 대표자가 제1호부터 <u>제6호</u>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</p>	<p><u>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</u></p> <p><u>8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<u>9.</u> -----<u>제8호</u>----- ----- ---</p>
--	--